

제안이유

보건, 사회, 환경업무 전반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양주군의회의 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

【 3 】 양주군의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년월일 : 1997. 6. 9.

제안자 : 유재원의원의 2인

제안이유

- 양주군의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현행 제5조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에 직제개편으로 인한 관련부서를 추가하고자 함.

주요골자

- 제5조 제1항의 감사 및 조사대상기관에 군립도서관, 상수도사업소, 문화관광사업소를 추가함.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의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중 제1항 제5호를 제8호로하고

동조 제1항 제6호를 제9호로 하며 동조 제1항 제5호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군립도서관
- 6. 상수도사업소
- 7. 문화관광사업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p> <p>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략)</p> <p style="padding-left: 40px;">(신설)</p> <p style="padding-left: 40px;">(신설)</p> <p style="padding-left: 40px;">(신설)</p> <p>5. (생략)</p> <p>6. (생략)</p>	<p>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p> <p>① _____</p> <p style="padding-left: 40px;">_____.</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군립도서관</u></p> <p>6. <u>상수도사업소</u></p> <p>7. <u>문화관광사업소</u></p> <p>8. (현행과 같음)</p> <p>9. (현행과 같음)</p>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1991. 4. 13]
[조례 제1383호]

개정 1994. 8.25. 조례 제1503호

“ 1994.10.26. 조례 제1514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감사) ① 의회는 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이하“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94. 8. 25)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7일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③ 감사 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 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감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행할 경우에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94. 8. 25)

제 3 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가 발의되면 본회의 또는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한다.(개정 '94. 8. 25)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 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제1편 의회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행할 경우에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94. 8. 25)

제 4 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 5 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청

2. 보건소

3. 농촌지도소

4. 위생환경사업소(신설 '94. 8. 25)

5. 읍 면

6. 법 제95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 하여야 한다.(개정 '94. 10. 26)

제 6 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도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한다.(신설 '94. 10. 26)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 7 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 8 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9 조(감사 또는 조사의방법) ①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군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94. 8. 25)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4. 8. 25)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신설 '94. 8. 25)

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신설 '94. 8. 25)

⑥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94. 8. 25)

제 9 조의 1(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 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94. 8. 25)

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신설 '94. 8. 25)

③ 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등 실비를 지급한다.(신설 '94. 8. 25)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개정 '94. 8. 25)

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4. 8. 25)

제1편 의회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개정 '94. 8. 25)

제13조(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양주군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주군의회위원회조례와 양주군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991. 4. 13 조례 제1383호)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